

제434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9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9)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3)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2)
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4)
11.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9)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1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18.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19.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7)
20.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상정된 안건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2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9) 2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2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2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2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3)	3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2)	3
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3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3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4)	3
11.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9)	3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3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3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3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3
1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3
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3
18.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3
19.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7)	3
20.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3

(14시03분 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등의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9)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3)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2)
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4)
11.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9)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1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18.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19.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7)
20. 1980년 사복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14시04분)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2항,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입영의무 면제 및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에 따르면 입영의무 면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36세부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등 열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이를 각각 45세, 50세로 상향하는 것이고 유용원 의원안은 열네 가지 유형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병역의무 종료는 현행법에 따르면 40세인데 김병기 의원안은 이를 52세로 그리고 유용원 의원안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45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연령 상한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입영의무 면제 연령 상향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찬성의견이 64%인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두 의원안의 경우 차이가 있는데요. 김병기 의원안은 연령 상향을 급격히 올리는 측면이 있어서 유용원 의원안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열네 가지 유형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연령 상향을 차등하는 것과는 달리 열네 가지 유형 전부를 똑같이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입법 사례를 따른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시·사변 등에 현역 등의 병역의무기간 상한 관련 내용입니다.

전시·사변 등의 경우 병역의무기간을 현행은 45세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예비역 등의 국외여행허가 연령이 18세에서 45세로 돼 있고 입영의무 종료는 37세로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각각 전시 병역의무기간 연장을 유용원 의원안은 47세로, 김병기 의원안은 54세로,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변경은 김병기 의원안은 18세에서 54세로, 입영의무 종료기간 연장은 46세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시·사변 중 병역의무기간 연장 상향하는 내용은 동 개정안의 주요 입법취지인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 시도 방지와는 다소 무관한 내용으로 꼭 둘을 연동시켜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먼저 3페이지 71조 등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연령 상향 대상을 현행법 71조에 따른 병역기피 의심 유형 14개 유형 전제로 조정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의 상향 한도를 최대 45세까지 설정하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83조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 상향은 병역의무 회피와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제가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개 유형 전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국방부·병무청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나이가 문제인데 5페이지의 병무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44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39.4%, 43세 및 그 이하로 상향하는 것에서는 60.6%로 43세 및 그 이하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연령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43세 안이 더 적절하지 않나,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차관님한테 묻는 게 낫겠나…… 차장님한테 묻는 게 낫겠네.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임종득 위원 이것 핵심은 현행법에 있는 36세라고 하는 부분이 나이가 전체적으로 많아도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다음에 징병 가능 인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상향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면탈하려고 하는 부분을 막자는 거 아닙니까?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절하나라는 부분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대상 인원을 40세…… 유용원 의원 같은 경우 36세, 의무 종료를 40세 이렇게 했는데 김병기 의원안은 45세, 52세 이렇게 늘었던 말이에요.

이게 늘어났을 때 병무청 차원에서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뭔가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연령이 상향되면 35세까지는 현역복무 의무가 있고 36세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령 상향이 되면 고령자는 우선 소집해서 복무하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연령이 많은 경우에는 복무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인원이 대상도 늘어나고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요되는 인원들이 있다는 거지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늘리는 데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늘리는 데 찬성한다 그러면 정부안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5년 늘리는데.

그다음에 전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는 게, 기존 현행대로 가는 게 맞는지……

○한기호 위원 전시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도 유용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47세, 그다음 김병기 의원께서 제시하신 54세 그리고 정부안 같은 경우는 45세 그냥 현행으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현행 유지입니다.

○한기호 위원 우크라이나에서 몇 세까지 하나면 55세까지 들어갑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한기호 위원님, 54세……

○한기호 위원 저는 50세가 넘어도 충분히 전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어떤……

○백선희 위원 저는 몇 세까지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5페이지의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많기는 한데, 39~44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체적인 능력은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몇 세까지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병기 의원안이나, 50세는 저는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식도 조사의 결과를 조금 어느 정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3·4세를 더하게 되면 여기가 47.3%가 나오고 그리고 5세 상향 43세까지 하게 되면 60.7%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44세 이상은 39.4%로 가장 많다, 이렇게 볼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통계치를 조금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늘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50세 이상도 사실은 시니어 아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절벽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 부족은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18개월의 의무복무기간만 치더라도 훈련기간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연 전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50세 이상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50세 이상 분들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에 전문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연령을 크게 늘리는 것도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늘리는 게 사회적 추세고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국방부 입장이나 병무청 입장에서는 전시 동원연령은 현행을 유지하자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유용원 위원께서 제시하셨던 전시 연령 47세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은 50세까지 올려도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신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쪽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병무청, 정부의 안을 따르되 전시와 관련해서는 기존대로 두자는 게 정부안이지 않습니까? 정부 의견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데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늘리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국방부차관 이두희 일단 사전에 논의된 건 아니지만 유용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47세 정도까지는 충분히……

○소위원장 부승찬 수용할 수 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는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무청 입장은……

○병무청차장 김용무 병무청도 같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병무청도 동의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입영 자원의 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터지자마자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45세 이상은 국외출국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한 번 더 50세로 올렸고 최근에는 55세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시가 되면 그 상황에 맞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만약 사전에 우리가 법으로 전시의 병역의무기간을 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올릴 수도 있고 전쟁이 빨리 끝나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과도하게 올리는 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훈련을 안 하느냐, 전시 대비해서 훈련은 안 하는 거지요? 예비군·민방위 끝나고 나서는 훈련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45세까지 하는 건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동원훈련하고 이것과는 또 별개예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없는 거고 다만 의무기간, 병역을 의무로 했을 때 국민들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의무로 투입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미리 갖고 있다가 막상 일이 벌어지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50세 가는 건 당연히 반대고요, 47세도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건 상황이 닥치면 해결하게 돼 있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백선희 위원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요, 어느 연령이냐에 따라서 인구수가 다르거든요. 지금 20대·30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낮은 게 사실인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45세에서 47세로 늘어나야 되는 통계적 근거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 45세까지 하면 5년 전에는 1000명이었는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900명이 됐다, 그래서 47세로 늘어나야지만 다시 1000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면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45세로 유지했을 때하고 47세로 늘렸을 경우에 통계적으로 몇 명이 해당되는지 조사를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인사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인사기획관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이인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준은 이렇게 삼습니다, 전시 소요인력 그다음에 예비군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산정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자원이 병역법 내에 있는 인원에서 충당이 가능한가의 문제인데 지금은 아마 여력이 있을 텐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는 전시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을 건가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정확한 통계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의 분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백선희 위원 저는 정책 결정할 때는 통계 기반으로, 과학적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보면 어느 시점인가에는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충당 가능하나 나중에, 미래에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늘리는 문제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참여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45세에서 47세로 늘어나게 됐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나와야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냥 두는 게 좋겠다 판단이 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45세로 돼 있던 게 47세로 되면 2살이 늘어나는 건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불편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비태세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예비군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가장 큰 차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기존에 45세까지였는데 47세의 남성들에게까지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마음의 짐이 가장 큰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낼 때 앞부분은 동의를 하고 뒷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병역 면탈, 해외에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나이가 지나면 그 이후에 국내에 들어오면서 병역 면탈이 되고, 요즘 해외 유학도 많이 가고 취업도 많이 하고 하는 이 추세 때문에 병역자원도 부족한데 여기에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부분은 동의를 했고, 뒷부분은 그 취지와는 약간 다른 문제이고 우리 국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의무 부과를 늘린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이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초에 드렸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결국 말씀하신 것으로 봐 가지고는 전시 병역의무기간 연장하는 부분은 대비태세가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나이만 2살 늘려 놓는다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심리적인 의무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임종득 위원 심리적인 것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박선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준비태세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또 고민을……

○한기호 위원 전쟁 나면 나는 다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임종득 위원** 그것은 그거고, 상황이 되면 늘릴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전시 상황이고 이래 가지고……

○**박선원 위원** 1분 내로 줄이겠습니다.

임전무퇴의 태세는 좋은데요, 앞으로는 47세가 동원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전역할 때 듣잖아요. ‘당신은 전역하면 나중에 예비군 하고 민방위훈련 하고 얼마 있다가 47세 되면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학습되어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의원님 몇 분이 ‘47세가 좋을 것 같아, 언제 전쟁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다 이거지요. 전역한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저희처럼 병역 안 할 사람이, 제가 63세거든요. 여기 다 안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47세로 올리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잠시만요, 전시 동원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정부안도 신중검토입니다.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리고 유용원 위원님께서 2년을 올리자고 했으니 그래도 개정 법을 발의하신 유용원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박 위원님,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발의한 배경은, 제가 우크라이나를 두 번 갔다 오다 보니까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현황이 악화되면서 계속 연령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할 수도 있으나 법 바꾸는 게,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하는 사안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전 대비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원 위원** 세계평화 무드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전시라고 이러지 말고.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논의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입영과 관련된 것은 5세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해서 병역 면탈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이나 정부 측의 의견이 같은 것 같고요.

전시 동원 병역의무 종료 연령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신중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나이는 45세로 올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나이는 지금 정부안이 43세 아닙니까?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43세고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은 45세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43·45 맞지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

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방금 정리한 내용 가운데 나머지 두 내용도 똑같이 수정안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예.

○전문위원 문성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은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출입국자료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난 소위에서 가족의 범위를 구체화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사일정 4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은 현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전역 보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숙련인력 확보’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역 보류기간은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발적인 전역 보류 가능 사유에 ‘숙련인력 확보’를 추가하고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 군이 병력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숙련인력의 확보는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으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숙련인력의 확보’를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 운용·유지, 전투지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항입니다.

의사일정 5항은 현행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병역기피 범죄를 예방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개 방법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규정하여 다른 공개 방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등’이라는 표현은 좀 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3항부터 5항까지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3항,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4항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후반부에 말씀하셨던 전역 보류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 숙련인력 확보의 개념을 구체화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동의를 합니다.

5항,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 없으시지요?

○백선희 위원 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임종득 위원 전부 다요? 3개 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임종득 위원 논의도 안 하고 벌써……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가족의 범위를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안이 반영돼 가지고 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보고요.

21페이지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언론 공개와 관련해서도 예전에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6개월 경과’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실질적으로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나 이러저러한 사유로 등기를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최대한 대상자에게 직접 분명하게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병무청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현역병 전역 보류 사유 추가, 기간 연장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시해 준 내용에 보면 전역 보류를 하는 부분이 24년도, 25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군으로 봤을 때는 육군하고 해군의 증가가 두드러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해외 파병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러냐고요. 공군은 하나도 없어요. 해병대가 조금 있고 육군하고 해군에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가……

○국방부차관 이두희 실제로 해외 파병 관련 인원들이 공군은 없는데 육군과 해군이 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그게 지금 이 숫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해외 파병이 파병 주기는 6개월씩 되더라도 준비기간을 따지면 한 15개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장이 안 되면 병사는 사실상 18개월 군 복무기간에 해외 파병을 보낼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편법이라기보다는 병력 운용의 융통성, 저도 군생활을 했지만 지휘관 입장에서, 특히 방공이나 이런 장비운용병도 있고 해외 파병도 있고 병력 운용의 융통성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해외 파병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해외 파병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비 구축……

○**임종득 위원** 그렇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장비 숙련 모범장병으로 해 가지고 늘리는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공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말을 그냥 숙련군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파병과 관련돼 가지고 연장되는 부분들의 수요가 전부인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도 포병이어서 장비를 운용했던 사람인데, 그 부분이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해외 파병은 아시겠지만 동명부대는 올해가 해외 파병 끝입니다. 이제 불러들입니다. 남는 게 남수단의 한빛부대와 청해부대이고 남수단의 한빛부대도 효용성이 거의 없어져서 내년이나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더더욱 고려할 필요 없지요, 그 말이라면. 해외 파병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소요가 생길 수 있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런데 그것보다는……

○**임종득 위원**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걸 늘리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여기 명시돼 있는 것처럼 지금 18개월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군생활 하실 때와 다르고, 저도 막바지에 있었는데 과거의 일병 정도 되면 전역을 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데이터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진짜 숙련군이 필요해 가지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기에 따라서 법을 고쳐줘 가지고 그렇게 가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육해공군에서 유독 육군과 해군이 늘어나고 공군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파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내가 물었던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파병이 다 끝나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논리가 아주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해외 파병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외 파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파병이 목적이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3개월이라는 게 있어서 해외 파병에 필요한 부분은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해외 파병이 있어 가지고 연장을 함으로 해 가지고 고참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실제로 후임병들이 가야 될 기회를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숫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파병을 가는 소요가, 병사들의 소요가 딱 정해져 있는데 가고 싶다고 해 가지고 연장을 시키고 고려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회를 뺏기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것만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이걸 늘

려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위원님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말이 좀 길어져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파병 라이프 사이클이 15개월 정도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선임병이 후임병의 기회를 뺏는다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게 해외 파병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제가 그걸 안 해 봤습니까. 제가 해외 파병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병사를 데리고 갔던 사람이라고. 이게 연장이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나오면 대상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시기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딱 늘어나는 순간 그 늘어난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대상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틀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 시기에 논의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양해해 주시면 인사국장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인사국장님.

○한기호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부승찬 잠시만요.

○한기호 위원 차관님, 우선 병장들이—이건 어차피 고참들이니까—병장들이 내일저축금까지 해서 2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면 해외파병수당을 병장이 월 얼마 받나요?

○소위원장 부승찬 뒤에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국방부인력정책과장 문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문희 서기관입니다.

파병 같은 경우에 월 수당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월 1600불에서 지역별로 한 이천삼사백 불 정도 분화돼서 받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한 2000불로 봐야 되겠네.

○국방부인력정책과장 문희 1600불에서 2000불 정도……

○한기호 위원 그냥 평균치만, 다 합치면……

○국방부인력정책과장 문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2000불이면 지금 1500원으로 치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지요?

○국방부인력정책과장 문희 300만 원 내외 될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200에다 300을 합치면 월 수령액이 500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연장하겠다고 당연히 하지. 안 그러겠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우선 국장님 얘기 들어보지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국방부인사기획관 이인구 인사기획관 이인구입니다.

일단 제도를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파병하고 훈련에 한해서만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이 없는 이유가 훈련하고 파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서 안 나왔는데 이번에 안규백 의원님 개정안은 일반적인 숙련병 확보를 위해서 모든 조건을 열어서 연장을 시키겠다라고 내용을 바꾸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수요가 있느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수요를 저희가 어떻게 봤냐면 임기제부사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부사관을 통해서 부사관으로 가려고 하는 인원도 있었지만 병의 직위에서 몇 개월 더 연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직위에서 연장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가 분명히 소요가 있고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난번 작년 11월 논의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란이 있어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보완을 한 것이 여기 17페이지, 개정안의 수정의견처럼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전투장비·전투지원장비’ 이 항목을 넣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일차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동의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돼.

○**소위원장 부승찬** 이걸 파병으로만 놓고 보면 특혜가 될 수 있는데 숙련병 활용을……

○**한기호 위원** 국방부장관이 발의한 건데 해 줘야지요.

○**임종득 위원** 그래서 더 더욱이 안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거 해 보고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이런 부분에 개정……

○**한기호 위원** 못 고쳐요, 법을 만들면 못 고쳐.

○**임종득 위원** 한번 해 놓으면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이 개정하시면 되지요.

6개월 연장하는 거니까요 일단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18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 재정적인 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 분야 숙련된 용사들을 확보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은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파병하고 훈련에 한정하고 3개월 하다 보니까 고참들만 전부, 파병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대략 2000불 정도. 2000불 정도면 5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이것도 보완이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임종득 위원은 보시는 거고 이게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임종득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다시 한번……

○**임종득 위원** 그래서 파병 외에 진짜 소요가 뭔가를 제가 요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을 못 하잖아요. 그냥 숙련공이 필요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테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은 나한테 별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사관들 있잖아요.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뽑아낸 거잖아요. 아닌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이인구 인사기획관 이인구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조금만 설명을 들어보시지요, 임 위원님.

○국방부인사기획관 이인구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들어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도 들어보시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이인구 최초에 임기제부사관을 운용하다가 부사관으로 당연히 직업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자투리 시간을 연장하는 병사들이 많았는데 그 병사들의 많은 니즈들이 본인이 원래 일하던 병 직위, 그다음에 같이 일하던 분대원들과 같이 몇 개월 더 일하는 소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병 직위에 임기제부사관을 넣어 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가 각 군에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사관의 신분이 아닌 현역병으로서 숙련된 사람이 몇 개월 더 우리 군에 남아 주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이인구 데이터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첨언해서, 악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수정의견이 사실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담은 건데 저희 국장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야전에서 병력을 운용해 보면 임기제부사관은 6개월 단위입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데 학기나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훈련이나 해파(海派) 상황이 아닌데 3개월, 4개월 이렇게 병생활을 더 하다가 나가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담아 두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단……

○임종득 위원 그 데이터를 달라니까요. 주면 내가 보고 설득되면 하겠다고.

○소위원장 부승찬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임종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구체적인 데이터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원래 군에 오랫동안 계셨고 또 안보실에 계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봐지고 또 숙련인력 확보라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큰 틀 속에서는 다 동의하실 분이지요.

다만 우리 정부에서, 국방부 여러분들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숙련인력 확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라는 것이 명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정부 출범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역량, 숙련공들에 대한 지위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잘 못하면 어떡해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종득 위원님, 유용원 위원님 또 백선희 위원님, 다들 여기에 동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를 해 주시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추후에 보완해서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3번 항목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4번 항목에서 결국은 숙련용사를 3개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중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통계자료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계자료가 준비되면요, 이 4번 항목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인사기획관 이인구 인사기획관 이인구입니다.

저희가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샘플조사로 KIDA에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IDA에서 단기복무간부 획득을 위한 정책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를 했었고요.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3개월 정도 연장은 43.6%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6개월까지를 21%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연구 수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위원님, 동의해 주시지요.

○임종득 위원 나중에 한번 나한테 별도로 와서 보고하세요.

○황명선 위원 그래도 큰마음 쓰신 거예요.

○임종득 위원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번·5번은 동의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고요. 4번 항목에 대해서는 차관님, 별도로 통계나 설문조사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임종득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게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는 거지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투력이나 그다음에 용사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법이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하실 말씀 있어요?

○황명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오늘 법안 소위에서 정리가 안 되면 다음에 전체회의 때까지 이 내용이 보고가 될 수 있어요, 임종득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국방부인사기획관 이인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국정과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차관님 답변하는데 계속 파병 이야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병 이외의 목적인 숙련인력 확보는 지금 인사기획관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과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안 되고 오늘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소위 회의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보류했다가 이후에 다뤘으면 좋겠고.

임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나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해 주시면 더 좋겠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건을 회의 끝날 때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법안을 이 시간 안에 꼭 해야 된다,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법 작년에 만들지 왜 올해 만듭니까. 지금 이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국회의원이고 법을 만드는 입장에 있지만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위원 7명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황명선 위원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논의할 게 논의되어야 되고, 안 된다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 18대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위원님,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법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정부에서 시급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황명선 위원 아니요. 지금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임종득 위원님께서서는 숙련인력과 관련해서 통계나 자료나 내용들이 있으면 요구를 했는데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홀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오늘 소위에 서 다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이지 이것을 무슨 날치기하듯이 이렇게 제가 하겠다는 겁니까?

○한기호 위원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린다고.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장 직권으로 가겠습니다.

3번·5번 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 거고요.

4번 항목에 대해서는 임종득 위원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납득시키고 나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소속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발의되었고 국방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요원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다양화입니다.

현행은 사회복지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연장복무 외에도 보수감액, 연가 단축 등 제재 처분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체감하는 불이익 유형을 다양화하는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성실한 복무 유도가 기대됩니다. 다만 두 의원안이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제재수단 다양화 관련해서는 주의조치를 제외한 세 가지 종류의 제재수단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연장복무에 대해서 기간이 미규정된 사항도 있는데 현행과 같이 연장복무에 대해서 기간을 5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자 연장복무 적용 여부에 대해서 한 의원께서는 적용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미적용으로 했는데 현행처럼 연장복무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형사처벌 대상 무단이탈 횟수 축소 내용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을 하거나 무단 조퇴해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것을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복무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서 복무기강 확립이 유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지금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지요원, 이 세 보충역이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요원만 떼어 내서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먼저 27페이지 첫 번째 항목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29페이지 두 번째,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님 우려에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우려를 반영해서 일부 수정안이 31·32·33페이지에 담겨 있는데 주 내용은 제재에 관련된 부분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전반적인 느낌은 저도 말씀드렸고 또 아까 임종득 위원님도 통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통계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신 내용, 병역법 개정안 등 주요 내용의 자료를 보니 장병내일준비적금하고 사회복지준비금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감봉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년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 감봉하면 30만 원 감봉이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지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치니 추가적으로 그 이상의 감봉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료는 읽힙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해서 감봉 같은 것이 들어가려면 현역병하교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역병의 자료를 보면 지금 견책, 근신, 휴가 단축, 감봉, 군기교육, 강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감봉에 해당하면 이 부분이 중징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보통 견책, 근신 이런 부분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비교표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감봉을 1~3개월로 한다라고 하는 박선원 의원님 안하고 임종득 의원님은 3월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고를 받게 되면, 경고가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한데 이 기준으로 잡은 것이 적절한지도 저는 현재로서의 데이터상으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면 장병내일준비적금 등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역병 등과 관련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감봉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중징계·경징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정도로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 1개월 감봉이고 어느 정도 됐을 때 2개월 감봉의 수준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김용무 병무청 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의무자들이 55만 원까지 불입하면 그 금액에 더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준비금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자들이 불입하는 액수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에 복무 위반이 길어지면서 감봉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은행과 계약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역병과의 형평성은 현재까지 사회복지무요원 제재수단이 단일하게 복무 연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재수단이 한정되면서 특히나 복무 위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부담이 계속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 인상과 더불어 감봉,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유시간을 활용하는 부분을 높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가 단축, 이 부분은 현역병들도 똑같이 그런 제재수단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역병과의 형평성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가 단축, 보수 감액, 연장복무, 세 가지 제재수단을 쓰는데 일차적으로는 연가 단축, 두 번째 보수 감액, 3차에 연장복무 이렇게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일곱 가지 사유가 있는데 4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고발 또 3회 이상 고발, 2회 이상 고발이 있어서 위반 항목별로 연가 단축, 보수 감액, 연장복무를 구체화시키려고 지금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지금 답변한 것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신 자료에는 영향이 있다라고 읽힙니다. 영향이 있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반대로

주셨습니다.

추측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관련된 자료로 보면 24년하고 25년, 25년 기준으로 150만 원이고요. 그래서 20%를 하게 되면 30만 원이 감액돼서 120만 원이 됩니다. 150만 원에서 55만 원이 적금의 납입한도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약 30% 수준입니다.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22·23·24년 이것 보시면 24년에도 12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30% 정도 조금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에 한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30%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봉을 받아 가지고 120만 원이 된다고 하면 55만 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의 30% 수준으로 해 가지고 40만 원으로 줄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적금의 납입한도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매칭으로 100%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고서 하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답변은 자료와 말씀하신 부분이 다르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형평성과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견책부터 시작해서 견책, 근신, 휴가 단축, 감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견책에 해당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한 것이 근신이고요. 휴가 단축과 감봉까지 이어지고 감봉은 일반적으로 중징계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 연장복무 5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부분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안에서는 형평성을 더 고려할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에서 일곱 가지 요소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곱 가지 요소를 시행령에 담을 거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담을 것인지를 자료로 저희들한테 미리 보여 주셔야지만 저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재작년 국정감사 시에 사회복지요원의 일탈행위를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들한테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통제가 전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일과 후에는 집에 퇴근하지요. 출퇴근합니다. 그리고 출근 자체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규정은 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연장복무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장복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말 계속 안 들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더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요원들은 ‘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기강 자체가, 현역

복무를 하면서 18개월간 고생하고 있는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아주 훨씬 덜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기강이 흐려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병무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징계하는 것을 다양화하자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복무연장만 있던 것을 감봉이라든가 또 병사들이 휴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들을 지금 넣어 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백선희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감봉으로 인해 가지고 병사들 적금 드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그 부분은 병무청에서 한번 검토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형평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역 복무요원들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되는 게 현역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강이 떨어져 있는 거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일단 백선희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백선희 위원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사회복무요원에게만 해당됩니까?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다른 요원들은요, 체육요원이라든지?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도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서……

○소위원장 부승찬 똑같은 것 아니에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경고를 하고 또 연장복무를 시키고 있으나 예술·체육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기존 법안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돼 있잖아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 보니까 기존에는 예술·체육도 다 들어가 있던데? 여기 보면……

○백선희 위원 24페이지에 비교표로 되어 있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비교표 보면 대상, 현행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35페이지요.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만 분리해서 하고 예술·체육요원하고 대체복무요원은 안 한다는 거예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소위원장 부승찬 이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네. 법에서 사회복무요원만 딱 떼 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한기호 위원 예술·체육요원은 감봉할 게 없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어찌 됐든 현행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행

법은 똑같이, 동일하게? 이게 왜…… 그다음에 대체복무요원 제재를 가하지요.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제재의 대상이, 경고처분의 대상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돼 있던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달리 가고 있으니까. 왜 사회복무요원만 빼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도 당초 위반행위에 대해서 경고처분하고 연장복무하도록 돼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 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는 합숙복무를 통해서 규정 위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 위반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분리해서, 예술·체육요원과 대체복무요원과 분리해서 조금 더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면서 강화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그 답변에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고처분을 5회 받으면, 그러면 예술·체육요원하고 대체복무요원은 경고를 받지 않아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받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5회 받으면 형사처벌이에요, 여기도?

○**병무청차장 김용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제 얘기는 개정안에 사회복무요원은 5회 이상으로 가잖아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위반 사유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5회인 경우도 있고 4회인 경우도 있고 8회인 경우도 있고……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러니까 경고는 받잖아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그 횟수를 제한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5회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어차피 예술·체육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도 그 범주에 넣어서, 처벌은 안 되지만 사회복무요원만…… 5회 이상 경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병무청차장 김용무** 그러면 현재는 8회 이상 경고처분되면 형사처벌받도록 돼 있는데 예술·체육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이 취소됩니다. 원신분 복귀되는 강한 측면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보는 측면은……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편입 취소가 되든 뭐 하든, 8회를 받든 5회를 받든 형사처벌 대상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서승일** 사회복무국장 서승일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서승일**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무단지각이나 무단조퇴에 대해서 8회를 5회로 단축을 합니다. 33조 2항에 사유가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2회에 고발하는 것도 있고 4회에 고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법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일단 8회에서 5회로 단축하는 것은 무

단지각과 무단조퇴, 복무 위반자 중에 72.3%를 차지하는 무단지각자와 무단조퇴자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근무태만이라든가, 정치운동 금지, 가혹행위, 검직 위반 이런 것은 별도로 횡수를 달리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제 얘기는요, 현행을 읽어 볼게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면 예술·체육요원이나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고, 현행에? 그리고 근무장소 이탈한 경우는요?

제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한기호 위원 복잡한 것을 너무 심플하게 질문하니까 그렇지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서승일 그러니까 처벌의 종류에 따라서, 제도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나 이번에 강화할 때는 사회복무요원만 강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체역이 생겼는데 그때 만들 때는 같은……

○소위원장 부승찬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술·체육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이 위반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관계 없어. 그러나 현재 법에는 이렇게 8회를 해 놓고 여기에는 5회로 줄이면서 그 사람들은 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 사람들 위반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왜 대상 자체를 분리해 버리냐 이거지, 본인들이 위반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우선 그게 안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 예술·체육요원들은 보수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받는 게 있으니까 혜택받는 것이, 혜택이랄까? 기본적으로 받는 게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현재 위원장님이 읽어 주신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이렇게 해 놓고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데 8회를 5회로 지금 바꾸는 건데 대상도 똑같이 봐줘야지요, 그러면. 그것을 뭘 복잡하게 자꾸 얘기해?

그냥 놔두면 돼요. 8회를 5회로 바꾸면 되는 거지. 간단한 건데 뭘 자꾸 얘기를 해요?

○소위원장 부승찬 말씀하세요.

○유용원 위원 형평성 문제잖아요?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소위원장 부승찬 예, 괜한 질문을 해서 죄송하고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쉽게 내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한기호 위원 어려운 질의인 것을 쉽게 질문하니까 그렇지.

○소위원장 부승찬 너무 쉽게 질문하셔서……

백선회 위원이 여전히 동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백선회 위원께 충분히 설명해서요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종득 위원 천천히 갑시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그래서……

○한기호 위원 실제로 야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병사들에게 과거에는 잘못하면 영창 처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창 처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차려도 못 시킵니다. 과거에는 군기교육대라는 곳이 있어서 군기교육대 들어가 가지고 연병장을 구보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전에서 현역병들한테 하는 것은 진급 누락하고 감봉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병사들에 대한 징계는 감봉하고 그다음에 진급 누락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역들하고 대체복무요원하고 어떻게 또 같이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여기에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체복무요원들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한다면 현역들만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똑같이 이들에게도 그만한 상응한 징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등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4항·제6항·제7항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무청은 나가고 방사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방산물자 등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방사청장의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개정안은 수출거래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출거래 현황 관련 문서가 최종사용자증명서인데 이게 통상은 2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기한을 현실화해서 방위산업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9항입니다.

의사일정 9항은 연구개발, 구매 등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단계별 품질보증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경우 품질보증 정책의 객관성과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금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적용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시행규칙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품질보증 제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나머지 3항부터 5항까지는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특수한 성격의 내용으로 성격상 시행규칙에 규율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은 이 두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8항,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9항, 전문의견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7일에서 두 배를 늘리면 얼마예요? 7일을 두 배로 늘리면 14일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7일을 세 배로 늘리면 얼마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21일입니다.

○한기호 위원 21일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30일은 얼마를 늘린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몇 배의 차원보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1주에서 한 달로 연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유가 뭐니까, 늘려 주는 이유가?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수출거래 현황을 접수받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EUC라는 최종사용자증명서 이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최근 5년간 사례를 살펴보니 26일 정도 소요된 건수도 있고 21일 소요된 건수도 있는 등 20일 이상 소요되는 건수가 있어서 30일 정도로 하면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일 이내라고 해 놓고 7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

게 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지금 사실은 별도의 처벌 조치는 가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의 설명을 들어 보면 대부분 규정에 무리한 점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한심한 게, 지금 이게 7일을 30일로 늘려야 되는 타당성이 있다고 차장님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업체들이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뭐 했냐고요? 방사청은 뭐 했냐니까? 도대체…… 방사청이 업무 태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 그러지. 뭘 일이 있을 때 한 두 배 정도 늘려 주면 그러면 충분할 거야. 그런데 세 배도 아니고 30일을 늘려 주면 이게 얼마나 많아요. 네 배 이상을 늘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으로 태만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태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거 늘려 주는 거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데 대해서 방사청 직원들이 순 엉터리다 이거예요. 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질문을 좀 해 봅시다.

이 최종사용자증명서, 엔드 유저 서티피케이트(End User Certificate) 이거 말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걸 언제 작성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보통 수출이 되면 수입을 해 간 국가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문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무기체계를 너희들한테 수출하는데 이것의 최종사용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최초부터 검토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에 이미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종사용자증명서가 7일 이내에 안 되고 20일, 30일 걸렸다는 것은 그러면 이 자체가 7일에서 지금 위법을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7일로 지내 왔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이 건에 대해서는 통상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단계에서 EUC를, 최종사용자 증명을 받게 돼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허가가 면제되는 건에 대해서 먼저 수출을 하고 사후적으로 수출거래 현황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한 겁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방사청장의 허가가 면제가 되더라도 수출을 하면 엔드 유저 서티피케이션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면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방위사업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수출한 경우에 동일한 국가에 2년 내에 동일한 물품

을 수출할 때 허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 그 EUC는 별도로 허가가 면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업체가 받아서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수출을 한다 그러더라도 거기에는 계약의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서로가. 수량에 관한 부분이나 엔드 유저가 누가 되는 거냐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는 시점에 엔드 유저 서티피케이션에 누가 사용한다는 것이 다 된 걸 보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안 하고는 안 되지요. 수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용자가 누구라는 걸 나중에 달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종득 위원** 아니, 허가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그 최종사용자가 누구냐는 계약을 추가로 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계약에 의해서, 확인이 된 상태에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그 시점에는 이미 최종사용자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만에 가능한 거지 이게 수출되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어떻게 땀니까? 그게 쉬워요? 요즘은 팩스로 해 가지고 금방 될지는 모르나.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통상 제품을 선적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 증명을 떼서 제출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저희들이 7일을 주니까 너무 짧으니까……

○**임종득 위원** 아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적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사용자를 증명해 보인다? 그런데 선적을 했는데 최종사용자를 받아 보니까 애는 안 돼, 이 단체는 안 돼, 이 국가는 안 돼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선적한 것까지의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저희들이 그래서 허가 면제가 되는 경우를 관련 법에 엄격하게 규정을 해 놔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국가에 동일한 품목을 허가하고 난 다음에 2년 내에 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보통 제품을 선적하고 난 다음에 수출거래현황서를, 업체가 자료를 모아서 그런 부분을 방위사업청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7일로, 최초에 법을 만들 때도 7일로 했던 거고 지금까지도 지내 오면서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주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지금 검토보고서에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저희들이 최근 5년간 104건을 실제로 면제가 된 상태에서 수출거래 현황을 사후에 받았는데 그중에서 15건이 7일을 넘긴 경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 26일까지 소요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 업체가 태만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간 자체가 촉박하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 자체가, 저는 설명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사용자는 결정되게 돼 있다니까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

지요? 계약이 되고 나서 이 물품이 나와 가지고 선적하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선적하고 난 다음에 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뒤에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방위사업청 기술국장입니다.

수출 허가를 당연히 받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면제해 주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수출 허가할 때 100개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고 그러면 이제 한 번에 100개가 나가지 않고 일부가 나가고 그 나머지가 후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1개의 계약과 1개의 EUC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두 번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일단 수출 허가받은 걸로 해서 나가고 다만 그 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최종사용자가 바뀌는 건가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아닙니다. 어떤 국가에 수출하겠다는 물량에 대해서 같은 동일 품목에 동일 국가이고 수출하겠다고 허가받은 물량 안에서 분할이 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출 허가를 면제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수출이 이루어진 후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한경수 기조관인데, 추가 설명드리면요……

○소위원장 부승찬 잠깐만요. 누구인지 설명……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한경수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수출 허가를 받을 때는 1년을 내주게 됩니다. 1년을 내주는데 기술국장이 말한 것처럼 1년에 100개에 대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1년 이내에 한 50개가 수출이 되고 그 1년 뒤, 그러니까 2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국가에 동일한 품목이 나갈 때 이때는 원래대로 하면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면제를 해 주고 이때는 추후에 확보된 게 동일하다는 걸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항이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7일 이내라고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7일을 넘어서는 게…… 최근 5년간 105건 중에 한 15건밖에 안 되고요. 최장으로 가는 게 26일이기 때문에 한 30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약이 최초 될 때 최종사용자가 결정이 돼 있었고 아까 설명한 대로라면 100대를 해야 되는데 50대를 1년 만에 못 하고 나머지 50대를 더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계약이 따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예, 1개의 계약 안에서……

○임종득 위원 그냥 가는 거지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예.

○임종득 위원 그러면 될 준비하는 게 시간이 걸려 가지고 팩스 한번 날리면 몇 초 만 이면 날아오는데 최종사용자도 안 바뀌었고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게 7일은 안 되고 30일은 되고 하는 것 자체는 업무하는 데 있어서 기강에 루즈함

에 있는 거지 프로세스의 복잡함이라든가 시간이, 인시(人時)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위원님, 지금 통상 EUC는, 최종사용자 증빙은 수출 대상국에서 발급해 주는 사항인데 실제로 수출 대상국에서 국가에 따라서 행정 소요 기간이 걸려서, 이렇게 소요된 기간이 많이 있어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사실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최초에 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대에 대해서 엔드 유저 서티피케이션이 발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50대밖에 못 들어가서 나중에 50대가 가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런데 계약서에는 당연히 갑을 간에 최종사용자가 누구라는 계약이 되는 거고 또 이 물건이 선적돼서 실제로 그쪽으로 선적됐다는 그런 자료하고 포함해서 또다시 구매국에서, 수출 대상국에서 별도의 EUC를 또 발급하게 돼 있는 것이라서 계약서와 별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급 증명서를 처리하는 행정 소요 기간이 수출 대상국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규정상으로 보면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출한 자’는 수출을 완료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수출 완료한 자가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7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고 그리고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여기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꼭 30일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연장은 필요하지만.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5년간 104건이 있었고 그중에서 5년간 15건이 7일을 넘었어요, 14일이나 20일을 넘은 게 아니고. 그리고 15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비율로 보면 13%거든요. 그리고 15건만이 7일을 넘겼고 최장 26일 딱 한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정상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유는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동의가 되나 합리적으로 기한을 30일이 아니라 조금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근거 기반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7일 이내가 몇 퍼센트인지 지금 말씀으로 이것이 넘어가는 경우가 15건, 13%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4일이 넘어가는 경우는 얼마인지, 21일이 넘어가는 경우는 얼마인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보면, 이 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방산물자하고 국방과학기술원이 수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수출거래 현황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방사청의 업무는 뭐가 어찌지요? 이 거래를 받아서 하는 업무는 무엇이지요? 자료를 그냥 보관만 합니까? 수출거래 현황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방사청의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관련 업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이것은 이미 계약된 물량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 관

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면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자료는 보관 상태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7일이 아니라 사실은 30일 이내로 하게 되면 많은 경우가 늦게 제출을 할 것 같아요. 20일, 30일 이때 제출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현황자료를 20일, 30일 늦게 제출을 받았을 경우에 방사청에서 업무를 하는 데 내지는 현황 통계를 내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저희들이 대부분은 수출물량을 계약할 때 그런 계약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계로 잡히는 것이고 거래 현황은 사후적으로 관련 자료를 증빙 차원에서 내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거래 현황을 굉장히 빨리 받아야만 되는 행정적인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사후 현황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업체의 편의 이런 걸 고려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금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백선희 위원 저는 업체 편의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30일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 제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나 이것이 늦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방사청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에 어떤 사업 대응이든 이후의 대응에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30일이라고 하는 것을 적정 기간으로 만약에 조정한다라고 하면 몇 주 정도, 며칠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최장 26일 소요된 게 있고 15건 중에서 최근 5년간 21일 소요된 게 있는데 한 20일 정도로 하면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백선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궁금한 게, 지금 강제조항이잖아요. ‘하야야 한다’, ‘7이내’ 그렇지요? ‘하야야 한다’, 안 하면 업체한테 불이익은 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안 하면 지금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과태료나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7일 오버된 데 대해서 과태료나 교육명령이 내려간 사례는, 아까 15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지금까지 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경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국조실 규제개혁혁신단 여기서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에서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반영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30일이나 그러면 최장 기간의 기준으로 맞춘 것 아니에요, 26일?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26일은 걸리더라. 그러면 그동안 7일 이내 강제 조항인데 아무것도 처벌이 없어서 대외무역법상의 과태료나,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교육명령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교육명령 같은 게 방사청에서 업체로 내려간 사례는 없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7일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임종득 위원이 말씀하셨나?

○임종득 위원 아니요,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하여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왜 최장기간에 맞췄냐라는 게 백선희 위원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20일로 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처벌해도 업체는 불만이……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저희들이 26일을 말씀드린 게, 원인을 다 따져 보니까 실제로 우리 수출업체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이 기간이 이렇게 걸린 게 아니고 대부분 수입을 해 간 그 국가에서 EUC 발행의 행정 소요 기간이 과도하게 걸려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소위원장 부승찬 그 국가들은 중동 국가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국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중동 국가예요? 행정 처리가 늦는 국가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것 그냥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30일이나……

○임종득 위원 아니, 그걸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한기호 위원 반대 안 해요, 저도.

○임종득 위원 이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임종득 위원 이걸 내가 반대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산업체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당연히 풀어 줘야지요.

○한기호 위원 20일만 해.

○임종득 위원 풀어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반복해서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시행규칙에 의하면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수출 대상국에서 이것을 2주 걸려서 보내는 데도 있다고 하니 이것을 접수해서 수출거래 현황을 작성하는 데 업체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이걸 고려해서 30일로 하자라는 데 위원님들은 20일 정도도 괜찮지 않냐. 아니면 3주, 7일이니까 3주 해서 21일 이내, 3주 이내로 해도 업체에서는 현황 보고를 하는 데 문제는 없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21일을 해 주시면 104건 중에 이제까지 딱 1건이 21일을 넘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21일 정도로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수출 대상국에 업체가 현황 보고를 해야 되는데 EUC를 빨리 해 달라 독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주를 10일 안에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21일로 하면 1건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5년 단위로 봤을 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5년 통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3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걸 30일로 무한정 늘려 놓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도덕적 해이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7일 했는데 과태료도 안 내고 교육명령도 안 내리는데 30일로 한다고 내리겠어? 그때 또 오버해서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3주 이내, 21일 이내로 하는게 어떻겠냐라는…… 정리를 좀 하시지요.

그다음에 9항에 대해서 의견들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러면 제가 여쭙볼게요, 의견들 없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3항부터 5항까지를 품질보증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특수한 성격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걸 정부 측에서 동의했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임종득 위원 제가 정부 측에 묻고 싶은 게, 검토의견대로 3항과 5항 관련된 부분을 시행규칙에만 묶어 놔도 문제가 없습니까? 방사청에서 답하든지 아니면 차관이 답변……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저희들은 품질검사 관리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한국산업표준이나 이런 사항들을 법에 명시한다면 나머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에 관련된 조항들은 시행규칙에 명시해도 괜찮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정도 된다면……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게 항상 다른 법하교의 형평성인데 이것하고 유사한 것들이 시행규칙에 쪽 들어가 있으면 시행규칙에 넣는 게 맞고 법에 들어가 있으면 법에 넣는 게 맞지요. 어느 레벨이냐 이걸데, 이 레벨이 전문위원이나 국방부·방사청은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법을 발의하신 임종득 위원님만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 되지요? 동의하신 거지 않습니까?

○임종득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사일정 제11항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은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의사일정 11항은 특별법안 제정법안입니다.

15페이지 제정 취지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는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로 요즘의 소프트웨어 기술발전 주기를 고려한 획득에는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들은 신속·유연한 방식의 최적화된 획득 절차 마련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고 그 획득 절차를 위한 연구개발 방식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첨단 무기체계의 원활한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신속·유연한 방식의 최적화된 획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주요 조문별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제외입니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개정안은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신속·유연한 도입이 법의 목적과 취지임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 지정 및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 추진 근거 마련, 1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에 개략적인 배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반복주기 작업을 통하여 증분적·반복적으로 개발하는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별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아닌 합동참모의장이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두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에 대한 관련 규정이 부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경우 임무목표만 제시하고 체계개발 중에 구체화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요 결정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특성상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 23페이지입니다.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 절차 및 최종사용자집단의 참여입니다.

개정안과 특별법안은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사업은 크게 체계개발 단계, 전력화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화 이후 지속적인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시제품 보완 조치 관련해서 체계개발 단계에서 기능확인시험을 통해 보완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확인시험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핵심 단계에서 최종사용자집단의 피드백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인데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 특별법 안에 있는 최종사용자집단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시험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사업의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유연한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요. 다만 시험평가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개발 중 실시한 기능확인시험으로 최종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주 경미하지만 자구수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7페이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 중에서 위에서 셋째 줄에 ‘운용 예정인 소요군으로 구성된 인력’ 이렇게 돼 있는데 ‘소요군 등’으로 ‘등’을 하나 넣어서 합참이나 기품원, 타 기관이 참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고자 하는 것만 수정의견 제시하고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되게 중요한 법안을 김병주 의원님하고 유용원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2개 법안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지 않으면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김병주 의원은 방위사업법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이고 유용원 의원께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이 지금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통합된 상태에서 특별법으로 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청에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두 분 모두 사실은, 법 형식은 신법 제정과 개정 부분인데 실질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도 다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내용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방위사업법의 일부개정을 하는 것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특별법안을 만드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걸 이해를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임종득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사실은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계약이나 또 제도들에 관련해서는 방위사업법에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법을 만들어도 방위사업법과 연계성을 굉장히

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획득 방식의 하나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 법체계상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나중에 더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제가 특별법 형태로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에 특히 AI의 중요성은 최근 이란 전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군이 하루 사이에 1000여 개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 것은 팔란티어 등이 개발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것하고 김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은 소프트웨어 무기체계를 충분적·반복적으로 개발하는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사청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김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기존의 방위사업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인데 아시다시피 기존 방위사업법은 철저하게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 획득 법안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을 택할 필요성이 있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낸 법안은 김 의원님이 제시하신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에 플러스해서, 각군이 실사용자이지 않습니까? 각군이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수행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 적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갤럭시 폰을 미군은 물론이고 나토, 이스라엘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휘·통제·통신은 물론 드론을 조종하는 데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성전자가 만드는 갤럭시 폰을 한국 군은 하드웨어 중심의 암호화 체계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 법률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제 법안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가장 큰 수요층인 육군에서 이러한 내용이 법제화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병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법안 중심으로 한다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그런 식의 접근으로 소프트웨어를 우리 군에서—AI를 포함해서—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특별법을 공청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안 됩니다.

○**한기호 위원** 우선 이 법안에 대한 출발부터 보면 국정과제 113번,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의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이행을 위한 법안입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의원실로 가져와서 하는 이 자체가, 이 법안은 김병

주 의원이 스스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의원들이 발의하는 게 청부입법이지요. 그런데 이 법은 99.9% 청부입법입니다.

차장님, 인정하지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나? 이걸 하려면 기재부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정부안으로 내놓으려면. 그런데 기재부가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야 되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발의했다, 편법을 썼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잘하는 일이나? 저는 잘못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청부입법으로 간다고 하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어차피 심의하는 소위 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법이 발의가 됐는데 저희 입장은 이겁니다’ 하고 최소한도 여기 소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와서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했어야 된다. 전혀 안 했다. 오늘 여기 와 앉아서 보라 이거지요. 그리고는 이 심의를 우리가 해 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상위 기관도 아니고 대등하다고 봐도 협조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등 이런 거겠지요. 여기에도 반드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 있는 것은 없어요.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키고 할 때는 그게 작동을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생짜배기 소프트웨어만 가져온 건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현재 방위사업법 14조 2항에 의해서 사업타당성을 제외하려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항목이 다 나와 있지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 전시·사변 등 긴급한 상황,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도 벤치마킹을 했겠지요. 그래서 1·2·3·4항이 있는데 트랙3의 경우도 최소한의 사타는 합니다, 미국도.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서는 아예 통째로 1·2·3, 수준도 나누지 않고 그냥 통째로 면제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째로 면제해요? 여기에도 중요도가 다 다르다고, 그다음에 긴급도가 다르고. 중요도와 긴급도가 다 다른데 통으로 면제하자, 면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여기서 누가 이것을 하느냐? 방위사업청장이 하느냐, 합참의장이 하느냐? 모든 소요 제기에 대한 것은 합참에 능력이 없으면 합참을 보강해서 해야지 합참의 능력이 못 미칠 것 같으니까 방사청이 직접하겠단, 안 된다. 절차와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거기에 문제가 다시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이 합동참모회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 것을 청장이 가져가서 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다.

뒤에 더 있는데 그만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 너무 길게 하면 위원장님이 짜증 내실 것 같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답변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우선 유용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협약이나 특히 소프트웨어, 암호화 관련된 규정들은 기존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도 무기

체계가기 때문에 무기체계와 관련해서 기존에 이런 보안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역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에 굳이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사업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워낙 기술 발전 추세는 빠르고 사타에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걸 면제해 주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 분석을 계속하면서 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사타 면제 조항은 이 법안에서 제외하고 사타를 받는 걸로 해서 가는 걸로……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트랙을 미국이 4단계로 나누듯이 나눌 수 있다는 거지.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결정권한은 수정안에 보시면 합참의장에게 있습니다. 합참의장에게 있는 것이고 방위사업청장은 사업 추진 방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찬성하시는 거예요?

임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되게 중요한 법안입니다. 되게 중요한 법안에요. 그러면 이걸 정말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가지고 법안도 만들고, 아까 제가 최초에 이야기했듯이 과연 방위사업법의 일부를 건드려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용원 위원이 제기한 대로 특별법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부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검토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업체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여기 지금 절차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계속 절규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부 담겨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대로 담고 그 사람들과 법안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제대로 가야지요. 이걸 국방위원한테도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한 상태에서 덜렁 들고 와 가지고—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갈 수가 없고요. 가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소위 위원들에 대한 직무유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제대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들 중요한 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급박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급박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법으로 제정법으로 가야 되는지 이 논쟁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논의해서 더 이상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정법을 발의하신 유용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공동 주최로 토론회 및 국방위 공청회 이런 것도 필요해 보여요. 이걸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예를 들어서 이 법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공청회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의논을 하고 이게 우리 국방위에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설명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급하다고 여기서 팡팡팡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들을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지요?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범죄구성요건 부분에서 목적범 규정을 일반 고의범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목적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 법정형을 상향하고 벌금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25년 1월에 상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13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 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는 하지만 개정안의 취지에 불구하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이미 2026년 3월 10일에 개정·공포되었음을 고려하면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체 내용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방산기술 국외 유출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걸 분석

한 개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산기술 보호법 제정 이후에 방산기술 보호로 처벌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없다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없어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례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분석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방산기술과 관련된 유출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처벌받은 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저희들이 방산기술을 별도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방산기술 내에 지정된 기술의 유출 사고는 없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실무자들, 맞아요, 지금 답변한 게?

제가 알고 있는 관련되는 내용만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그 처벌의 결과가 실행으로 해 가지고 징역을 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없이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과 관련되는 부분을 간첩죄로 다뤄야 된다고 해 가지고 법안을 제출했고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법사위에서도 소위에서 통과되려다가 말고 갑자기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홀딩되어 있어요. 방위사업법상에서는 그런데, 그런데 얼마 전에 간첩죄와 관련된 거는 통과했지요, 본회의를? 그래서 그것도 같이 따라서 통과돼야 될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유용원 위원님이 한번……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임 위원님 질의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방산기술 유출·침해 사고 발생한 게 총 82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방산기술 유출된 거는 37건이고,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지요.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업체 대표가 실행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들도 있는데 없다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산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방산기술 보호법과 군사 기밀 유출하고?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산기술 보호법에 지금 3000여 개의 기술을 국방기술 중에서 방산기술로 정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방산기술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 기술인데 그 기술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것도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당연히 해당될 것 같은데요, 잠수함 관련인데?

○**소위원장 부승찬** 뒤에 국장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유용원 위원 질문에 대한 거?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장 백종태**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장 백종태 대령입니다.

처벌 사례가 없다는 게 의아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방위

산업기술 보호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거고요. 대신 대외무역법이라든지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세요?

○유용원 위원 제가 발의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법에 이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6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산기술은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형평…… 균형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발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백선희 위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쭙보겠는데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년에서 3년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위산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방사청이 관리하고 있는 기술이 몇 개인가하고 그리고 방위산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K-방산 수출을 할 때도 절충무역으로 해 가지고 넘겨줘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또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등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고 방위산업기술이지만 이제는 조금 반공개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넘겨줘도 좋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도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저는 방산기술에 대해서 해외 수출을 할 때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입하는 나라의 기술 수준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 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별론으로 생각을 하고.

방산기술이라는 거는 국방기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카테고리이즈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최소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다루는 국가핵심기술 수준 정도의 보호 수준은 돼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 판단이 있고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에 준해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백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정리할게요.

12번 항목에 대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고의성으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벌칙 수준을 늘리는,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한다고 하였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동의 의견이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고, 13번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고 이미 유사한 법이 개정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보완이 가능하더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입니다. 소위 자료 45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할 때 현실적인 제약이 많으므로 정부의 재정 지원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지원대상이 ‘전문인력’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실제 이를 필요로 하는 인력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예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고용하는 연구인력’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부칙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본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에 관해서도 일몰이 없었고 또 일몰제도가 형식적 일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15항입니다.

의사일정 15항은 방산업체의 구매시험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방산업체가 군수품 구매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등 비용이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는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는 경우 역시 제안서 작성 비용 등 비용이 일부 발생하는데 현재는 이에 대한 보상이 없어 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14항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5항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고용하는 데 국가가 보조를 해 준다 이거야, 좋습니다. 성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관계없이 해 주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기업연구소가 있거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에서 실제로 연구인력을 고용했는지, 그 연구인력이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지를 심사해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에 성과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성과를 냈다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이것도 둘로 나누든지 셋으로 나누든지 나누어서 처음에 그러한 인력을 고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에 30%, 중간에 성적이 나왔을 때 40%, 마지막에 결과물이 아주 잘 나왔을 때 30% 해서 100이 지원되는 이런 식으로 나눠야지. 나중에…… 뭘 하든지 관계없이 쥐 놓고서, 성과도 안 나왔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쓸 때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에서 연구인력을 고용한다는 자체가 방위사업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고용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기업에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생산인력 이런 부분보다는 연구인력 쪽에서 너무나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수한 인력이 대기업으로 다 가버린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면, 고용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1인에 얼마나 지원하려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1인에 보통 연봉의 한 50%를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 보통 한 2000만~2500만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연?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1년에 1인당 2000만~2500만 원 정도……

○**한기호 위원** 그거를 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 성과도 없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성과가 클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번에 땅 이려고 끝낸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실제로 방산에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중소·중견기업이 450여 개 기업이 됩니다. 그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판단하기에 1년에 한 6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엄격한 선정·심사를 거쳐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꾸 더 얘기하게 하시는데, 특허를 하나 냈다든가 신물질을 개발해서 물질 등록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온 것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그냥 제품을 생산해서 하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국가의 돈을 쓰면서? 그 돈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성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면서 중간에 나눠서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걸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상식적으로는 한기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저는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와 유사한 개정안이 26년 3월 10일에 개정 공포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얼마나 유사하다는 거지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거는 앞에 있던 방산기술보호 인력……

○**임종득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료 42쪽에 보세요. 우측에 두 번째 동그라미.

○전문위원 문성환 시행 예정 법률은 소위 자료 44페이지 왼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내 말은 42쪽의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26년 3월 10일…… 점을 고려하면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논의를 할지 말지……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3호 안건이고……

○임종득 위원 그러면 이건 오타자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금 얘기한 것은……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나간 안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소위원장 부승찬 아까 의결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요.

14.

○임종득 위원 14……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임종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돈은 제한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걸 평가하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게 한기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성과가 날 수 있는지, 기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 부분을 구체화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47페이지에 있는 것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신설 안에 얼마나 지원을 할지 규모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27년도에 60명 선발해서 기준연봉의 50%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구체적인 액수는 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의 경우에 연봉은 정부가 책정하지 않고 기업에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수준의 최대 지원금액도 정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통상 실제로 기업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정부 통계에 나와 있는 평균 임금 수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백선희 위원 그래서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명확히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대상 기업인 중견기업·중소기업 중에서 기업에 어떤 제한도 마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ESG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든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어떤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하는 것을 갖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법에는 한정적으로 운영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정하지 말고 무한대로, 일단 제한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재원이 무엇이고, 그 재원이 한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재원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우선 재원은 정부 예산이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재원이고,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년에 한 60개 기업 정도

에 1명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한 번 지원하면 3년 정도 지원하고 다음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갈 것이고 60명을 지원하면 2500만 원 정도 잡으면 14억에서 15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백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15번 관련해서 저도 취지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만약에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27년부터 1년에 60명씩 지원하면 3년이니까……

○유용원 위원 아니요, 15번 김병주 의원님 법.

○소위원장 부승찬 시험평가.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시험평가는 27년에 한 3개 사업 생각하는데 25억 정도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저는 15번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을 잘 통과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저도 14번이나 15번 항목에 대해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다 통과했는데 계약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부담해서 다 해서 국가가 마련한 기준을 통과했는데 이것을 네가 부담해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기준을 통과 못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기호 위원님 말씀, 진짜 일괄적으로 다 제공하는 게 맞나, 액수에 관계없이. 단계를 좀 나눌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민·군이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실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아까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과제를 받아서 해외에서 도입하던 품목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든가 실제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핵심기술이나 핵심부품들을 개발하는 국내의 연구인력을 고용해서 체계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데 실제로 투입된 연구인력 이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내실 있게 성과 나는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 동의를……

○한기호 위원 통과시키세요. 통과시키는데 시행규칙이라도 정확히 넣어야 된다 이거지.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해 보여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버리면…… 그건 그렇고 시행규칙이라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넣고 그것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급됐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연구인력이 몇 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품 개발을 하는 데 1명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2명 이상, 10명 이상도 할 수 있는데 신규 채용과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그 사람한테만 50% 줘서 2500만 원을 더 준다. 그러면 기존에 그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인력의 보수체계가 있을 텐데 이 시점에 온 사람한테, 제품 공동개발한 사람이 서너 명 있는데 그중의 1명만 25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방식으로 지원됐을 때 문제점, 기업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1명한테만 계속 돈이 갈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래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전담인력이고 연구전담인력도 석사 인력이나 박사 인력이나 당연히 그레이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인건비가 제한되기 때문에 학사 인력만 뽑아 가지고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준다면 대기업에 갈 석박사 인력도 일부 중소기업이 고용해서 연구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제 질문은 연구소 입장에서 나도 박사고 이 사람도 박사고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은 5000만 원 받고 나는 1명으로 선정이 돼서 2500을 더 받아 가지고 7500만 원이 된다, 이게 그 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저는 대부분 지금 현재 방산업체나 민간업체도 마찬가지로 연구소의 연구인력들의 페이가 다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차등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수용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런 우려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동 가능한가라고 하는 우려점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2건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6항, 17항은 공통적으로 방산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든지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16항 관련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자 추가 관련해서, 현행은 우주항공산업체를 위한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인해서 우주항공사업자들이 현저히 높은 수준의 보험·보증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시다시피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행 방산공제조합원의 상당수가 우주항공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고요.

다만 방산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17항, 방산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방산공제조합 가입 대상은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지원체계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획득 역시 방위사업 수행에 해당되고 또 국방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고요. 다만 개정안에 ‘1호·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를 표현하였는데 기존 방위사업법 체계에 맞춰서 ‘방위사업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로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반영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이 발의한 법을 감히 얘기할 수 있나요?

○소위원장 부승찬 논쟁이 없는 법이에요, 사실은.

○한기호 위원 우선 우주항공사업자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 방산기업으로 지정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제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방산기업으로 지정되면.

○한기호 위원 그런데 방산기업으로 지정을 왜 안 했지요,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지금 우주항공사업자 수가 860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일부 73개 업체 정도가 방산에 들어와서 방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취지는 860개 중에 방산 업무를 하지 않는 나머지 기업들도 공제조합의 공제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800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것은 업체가 선택…… 조합원으로 가려면 조합원 출자를 해야 되고,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의 선택에 대해서 문호를 여는 거고 들어오고 말고는 업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업체는 반응이 어때요, 이것에 대한 반응. 원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굉장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제료를 착중도금을 받거나 선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공제 증서를 해 가지고 보증증서를 내야 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이나 민간 보증보험의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우주청에서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공제조합은 원해요, 안 원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공제조합도 당연히 원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기업도 원하고 공제조합도 원하고 방사청은 해 주고 싶고?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해 줘야지.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현행을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방산공제조합 가입 대상으로 무기체계 등 방위사업 관련 수행업체인 방산업체, 일반업체, 국과연 등’ 뒤에 불러블라 있는데 방산업체, 그러니까 우주항공사업자 중에서도 75개가 방산업체에 속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방산업체하고 또 따로 뎀 일반업체는 뭐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방산업체 지정 절차를 거친 업체고……

○임종득 위원 방산과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여하지만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가 있는 건 일반업체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다면 방위사업과 관련되는 기업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은 방산업체와 실질적으로 방산의 부품을 하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가입하는 부분은 일반업체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위사업법에 업체 분류가 방산으로 지정된 방산업체와 방산 관련 일반업체와 방산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돼 있는 것이고……

○임종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주항공사업자는 지금 세 번째 카테고리인데 넣겠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별도로 우주항공사업자로 명기를 해서……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좀 생똥맞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항공사업자가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된다면, 방위사업과 관련되는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게 방산업체든 방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산업체가 안 돼서 일반 사업체 등 여기에 포함되면 말 그대로 방산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도 아닌 세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것도 넣겠다고 하면은 형평성 원칙에 있어서 우주항공만 넣습니까? 다른 데는 안 넣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크게 방산업체 또 방산 관련 일반업체, 방산과 관련이 없는 일반업체 이렇게 세 카테고리이고, 이 업체는 모두 다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그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눈 것이고.

그래서 우주사업자 같은 경우는 군수품을 납품하지 않는 업체라 하더라도 우주 쪽은 어떤 보증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특례를 뒤서 이 방산공제회에 가입……

○임종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안 넣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법을 제·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카테고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게 딱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수행업체인 방산업체, 일반업체, 국과연, 관련되

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주항공업체, 이거 자체가 ‘그러면 우주항공업체가 아니면 빠지는 거야?’ 형평성의 문제가 바로 느껴지잖아요. 방금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돼 있는 상태에서 우주항공이 아닌 데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지금 실제로 다른 법에도 굉장히 많은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 엔지니어링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주 쪽을 공제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주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들 것이냐 해 보니까 기업 풀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우주청과 협의해서 방산공제조합에 우주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 말인데 그러면 왜 우주항공만 넣느냐고요. 다른 것도 넣어야지.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 위원님 말씀은 여기도 저기도 안 들어간 기업이 이것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지.

○**임종득 위원** 많지요. 엄청 많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중요한 산업들은 대부분 별도의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종득 위원** 그러면 우주항공 공제조합을 만들어야지.

○**소위원장 부승찬** 풀이 작아.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법체계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틀로 딱딱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우주항공이 불쑥 들어가니까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동의는 하시는 거지요?

○**임종득 위원** 예.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면 이거 빼야 되니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19항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최근 제출되어 소위에 직회부된 안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법안이 동일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71페이지에서 보듯이 이언주 의원안이 국방반도체 상생협력지원제도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수립 의무라든지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한 점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과 중에, 지난 3월 24일 날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정부 측 위원으로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또 진술인 건의사항 중에 국방반도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지금 국방반도체 육성과 지원에 관해서는 공청회도 완료되었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게 제정법안인 만큼 주요 조문별로 빠르게 검토하며 심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소위 자료 80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일종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작성했고요. 성일종 의원님 안에 없는 이언주 의원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단 구성을 하였습니다.

1조 목적 규정입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이언주 의원안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등 몇 가지 문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차이점이…… 기존 성일종 의원안 중심으로 내용이 유사하고 포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일종 의원님 안의 목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성일종 의원님 안, 이언주 의원님 안, 같은 내용입니다.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두 의원님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수립에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표현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같습니다.

제5조 국방반도체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고요. 다만 국방부에서 지금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국방부장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임종득 위원 토의를 하면서 가요, 아니면……

○전문위원 문성환 한번 검토의견 다 말씀드리고……

○임종득 위원 다 하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전문위원 문성환 다 하고 나서 할까요?

○백선희 위원 중간중간 조항 몇 개씩 끊어서 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잘라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간략히 의견들……

정부 측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에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조는 국방부장관,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수립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득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 최초에 하는 청문회 할 때도 제가 죽 봤었는데 방사청장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문제를 좀 제기했었는데 수정안에는 국방부장관이 총괄하는 걸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문제가 과연 국방부장관이 총괄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국방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국방부만의 사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엄청나게 관계가 돼 있고 지금 이미 태클 걸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산자부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도 다 연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보호와 관련돼 가지고 국방반도체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또 들어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것 안 되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컨트롤타워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안보실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다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기본법에 국방부장관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이유가 있다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가 더 들어가지 않으면 이 국방반도체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안보실이 실제 운용상에서는 다부처를 모아서 컨트롤타워를 하지만 법률안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데 안보실 책임으로 한다 이런 경우는 극히……

○임종득 위원 책임으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답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국방부장관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래서 국방부장관으로 합니다.

○임종득 위원 실질적으로 안보실 차원에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것을 기본법에 기술을 해 놔야 된다니까요. 안 해 놓으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장관으로 바꾸자고 의견을 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나 법무부, 재경부 이런 데를 다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방사청이 하기에 한계가 있고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보실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실하고 연계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그 취지인데 여기에 그 부분이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가도록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여기서 그것들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가기에는 여러 가지가 제한이 있을 겁니다, 부처별로 이기주의도 있고 또 중요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부승찬 임 위원님 공청회에 들어오셨었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 전에 했을 때 왔어요, 그 공청회 말고.

○소위원장 부승찬 여기요, 여기서 할 때.

○임종득 위원 저쪽에서 할 때 왔었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여기서 공청회 할 때 의견이 수렴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

○**임종득 위원**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사청은 안 된다, 국방부 가는 것도 그렇고 결국 컨트롤타워는 안보실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소위원장 부승찬** 통상적으로 안보실에서 컨트롤타워를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집행 과정에서는 하는데 소관 법률을 가지고……

○**한기호 위원** 법에는 안 들어가 있지.

○**소위원장 부승찬** 법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안보실장이 총괄한다’ 이런……

○**국방부차관 이두희** 대통령의 참모조직인데 거기서 어떤 특정 사업을 총괄한다는 거를 법에 넣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부장관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기호 위원** 법에 넣으려면 ‘대통령실’ 이렇게 넣어요.

○**임종득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한계가 있는지를 물어봤던 거고, 이게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실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통합되지 않으면 법 만들고도 제대로 못 가요. 저는 그걸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지금 대통령실의 과기비서관이 TF 장으로 돼 있는 범정부 국방반도체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되는 것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력지원체계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포괄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반도체위원회가 밑에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관련 부처가 다 들어옵니다. 산업부, 과기부, 기재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통솔 가능한……

○**소위원장 부승찬** 조직이랑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위원회 들어보고 그 부분이 미진하다면, 임종득 위원님 말씀처럼 미진하면 보완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기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왜 이게 성일종 의원님 안으로 법이 제출됐지요? 이게 방사청 어느 부서 업무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에 반도체인공지능과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안 하고 청부입법을 한 이유가…… 방사청이 자꾸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청부입법을 하느냐 이거야. 이게 간단한 법이면, 수정한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제정법인데 이걸 의원입법으로 한다는 게 여러분들, 방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래도 돼요?

이게 정부 부처가 전부 관련이 돼 있는데 이거를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하지 않고 청부입법으로 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쉽게 살려고 했어요. 지금 방사청이 하고 있는 입법활동이 전부 청부입법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다음부터 청부입법 하는 거는 아예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캔슬 하자고 할 거예요. 지금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니거든. 제가 줄곧 여기서 보고 있는데 방사청 생기고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무능하게 일도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하는 방사청이면 해체하든가.

왜 자꾸 청부입법을 합니까? 이렇게 정부 부처가 협조가 돼야 되는 법은 청부입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부입법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잘 들으셨지요?

저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국방반도체법도 워낙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공청회까지 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법들, 특히나 국가 중심 사업을 이끌, 국방 중심 사업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 정말 급하잖아요.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되고, 다른 국가들은 저 앞에 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뒤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한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잘하시고요.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의는 계속해서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가졌고 그 절차는 밟아 왔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이 법은 도저히 통과를 못 시키겠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통과를 시키겠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걸로……

일단 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문성환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입니다.

제6조에서는 반도체추진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안, 이연주 의원안, 같은 내용이고요.

수정안에서는 공청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3항 2호에 보시면 과기정·산업통상부 외에도 기획예산처의 실국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설치 규정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7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 2개가…… 그러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반도체추진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방사청이 대답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여기는 20명 중에서 5명 이상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내실 있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방추위로는 전문적인 심의가 제한된다는 판단하에서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한 거예요? 방사청 대답에 동의했느냐 이거지.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행안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대의견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 지금 써 놓기를 정부 부처하고 협조하는데, 결국 이거는 동의했다는 말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안부가 반도체위원회 별도로 갖는 걸 동의했느냐? 동의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오늘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79쪽에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는 기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중복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들이 이거 그렇지 않다, 위원회 구성 인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설명을 해야지. 아예 행안부도 설득이 안 된 거 아니예요? 그러고 지금 법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행안부에 그렇게 설명을 했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공식적으로 의견을……

○한기호 위원 여기 활자로 쓰여 있는 데 양해가 됐다고 얘기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전혀 모르잖아요. 방추위하고 반도체추진위원회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방추위에도 민간 전문위원들이 다섯 분 계시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분들이 국방반도체를 알아요? 전혀 모르고……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설명을 행안부에다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행안부가 문외한이야. 어떻게 이런 의견을 달아요? 와서 확인을 하든가, 법령을 검토를 하든가. 의견 줬으면 신중검토 필요…… 물론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건 그렇지만 국방반도체는 지금 이거 안 가면 사실은 산업부나 이쪽에서 전부 반도체를 하나에 종속시켜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어차피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관련 부처가 다 들어오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행안부도 포함돼 있었던 건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행안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행안부 의견을 달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행안부는 관계가 없는 부처예요.

○한기호 위원 조직을 만들려면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임종득 위원 조직 때문에 그런가요? 이건 위원회인데, 그냥? 조직이 아니잖아요. 위원회잖아요. 거기도 관여를 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행안부는 전반적으로 정부 위원회를 간소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일반론적으로……

○임종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안부의 이 반대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큰 문제가 안 돼요. 애들이 잘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만 설명하면 넘어가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낼 부처가 많아요. 지금 어떤 부처에다가 의견을 줬지요? 물어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기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쪽에…… 어차피 위원들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분명히 나눴을 것 같은데 거기의 반응은 어때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이 과정에서 산업부나 이런 쪽에 의견 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해소를 했고 지금 다 동의를 하고 행안부의 이 건 빼고는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 데는 없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79페이지에 관계 기관의 의견들이 다 명시돼 있고, 국정원은 해당 부분이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네요.

○**소위원장 부승찬** 국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뭔가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답변하세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저희가 법안 관련해서 전 부처에 의견 조회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를 비롯해서 몇 개 부처가 처음에는 조금 약간 오해도 있었고 그 부처의 정책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낸 게 있어서 다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후로는 비공식적·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받은 적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으면 기재부나 국정원까지도 다 의견을 들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문제가 없었다 이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커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지금 기재부에서 오케이 했다면 다행스러운 거고, 국정원은 관련돼서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관계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면 다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20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지금 방추위가 몇 명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2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방추위도 제가 21대 때 인원을 줄이는 걸로 법안을 냈다가 반대해서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20명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20명이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견 한마디도 안 하고 갈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진짜 필수인원으로 줄여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것도 하나 끼워 주고 저것도 하나 끼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명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20명이라고 한 것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으로 한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넣어서 장땡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저희들은 최소화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로서 군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관련 정부 부처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위원들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하여튼 너무 많아.

○**소위원장 부승찬** 전문위원님, 장까지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너무 많아. 이게 몇 장까지 있냐면……

○**전문위원 문성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약간 논쟁이 되는 이런 부분들 해서 장별로 몇 장 몇 조 해서 쪽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장별로 토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조별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오늘 정회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장별로……

○**전문위원 문성환** 지금 2장 하고 있는데요 2장 남은 조가 7조랑 8조입니다.

7조는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걸 동의하신다면 간단한 문구 수정입니다.

8조도 두 의원안이 같은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7·8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문위원님 검토·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7·8조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부분에 기본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이니까 7조 수정의견 ‘방위사업청장’ 이 부분을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문성환 예,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3장.

○전문위원 문성환 3장은 9조·10조 두 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인데요. 두 의원안은 주체가 방위사업청장 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국방부도 역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조 마찬가지로입니다.

○백선희 위원 질문드리면 3장에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을 제가 다 검토를 해봤더니 여러 조항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국방부장관은 전력지원 등등 추진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들어간 게 기존에는 방위사업청장 1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러 개의 조항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책임자를 명시하는 것이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른 법률에서도 이렇게 같은 급으로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동시에 이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명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의견을 준 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말씀……

○국방부차관 이두희 기본적으로 무기체계는 방위사업청장, 전력지원체계는 국방부장관, 별도로 구분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다음에 위원님들……

이게 연구개발이잖아요. R&D면 아무래도 방위사업청장이 맞지 않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R&D라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은 국방부에서 별도 그게 있어서……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렇기는 한데……

○임종득 위원 그거는 구분이 돼 있어서……

○소위원장 부승찬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문성환 다음 4장입니다.

제11조는 국방반도체 신뢰성 시험과 인증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증 대상에 이언주 의원안은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계 또는 생산하는 반도체를 추가했구요. 이 부분에서 포함할지 말아야 할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요구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반도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계·생산한 반도체까지 신뢰성 시험과 인증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정의견 관련해서, 두 개정안은 국방반도체 신뢰성 시험과 인증 두 가지를 위한 표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방반도체 인증은 신뢰성 시험의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표준 수립은 국방반도체 신뢰성 시험에 한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2조 국방반도체 우선구매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은 여기서 또다시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계 또는 생산한 반도체 중 반도체 신뢰성 시험을 통과한 반도체 이 부분을 추가한 게 성일중 의원안과 차이점입니다.

13조는 계약 또는 협약의 특례입니다.

전 항에서 연구개발의 주체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는 경우 그것을 반영한 수정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다소 길어 보이지만 방산업체 입장에서 자격요건과 지체상금의 규모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방위사업법 역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4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93쪽부터 검토의견, 부처 의견 등이 쪽 명시가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 수정 및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 작성돼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95페이지에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설계한 것이 기본적으로 군 요구 조건이 반영된 반도체가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경우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국방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요구 조건이 아닌 다른 반도체들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손 들었습니다.

방금 차관님께서 의무화하는 것은 제한이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언주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방반도체사업자가 국방반도체 업무를 쫓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축적이라든가 아이디어들에 국방 쪽에서 착안하지 못하는 부분의 기술력이 라든가 또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군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계속하면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안을 제기해서 국방부에서 들어봤을 때 ‘우리가 몰랐던 건데 이것 가능성 있고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 절차에다 넣는 과정이 좀 더 오픈된 거고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반영된다는 차원에서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검토하고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은

열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차장님, 임종득 위원님에 대한 답변……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국방반도체사업자 자체적으로 설계·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지 말자는 얘기고, 검증된 거면 당연히 경쟁이나 다른 형태로 충분히 군에 납품 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무화하면 안 돼요.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건데 초기 단계에서, 제품을, 국방반도체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들이 있던 말이에요. 군에서 착안하지 못하는 훨씬 더 좋은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거든. 그 부분들이 초기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국방부 차원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이 프로세싱에 반영하는 부분은 열어 놓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 의무화하는 게 아니고.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것은 당연히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법이 정한 연구개발 절차를 통해서 정부 과제로 만들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또 당연히 우선구매가 되기 때문에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그 시점의 문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품을 가지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 전 단계의 아이디어라든가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국방 분야에서 모르거나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평가나 뭐 하는 쪽으로 같이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것을 이연주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3월 18일이에요. 우리 공청회 한 게 며칠 날이지요?

○전문위원 문성환 3월 24일입니다.

○한기호 위원 3월 24일.

지금 제가 왜 날짜를 얘기하냐면,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게 25년도 2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얼마큼 와 있었냐? 1년 이상을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월 24일 날 공청회를 한다고 하기 바로 직전에 이연주 의원이 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따지냐면 이연주 의원이 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성일종 의원안에서 작은 분량을 수정했는데 방사청이 이연주 의원을 통해서 수정안을 냈든가, 기업이나 관련된 업체가 이연주 의원을 통해서 냈든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방사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하지 않았습니니다.

○한기호 위원 안 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왜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를 24일 날 하는데 18일 날 냈다 그러면 바로 6일 전이에요. 공청회 하는 것까지 다 알고서 낸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들어온 법들을 우리가 같이 심의하는 대상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중간에 누가 장난을 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연주 의원님이 낸 걸 내가 비교를 해 봤어요, 내용들이 뭔가. 이게 보니까 내

용들 자체가 업체와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의원들이지만 이것은 누가, 사실 이 내용을…… 이언주 의원이 국방위원이라고 하면 또 달라. 그런데 국방위원도 아니셔. 국방에 근무한 적도 없어. 그런데 이 법을 냈다는 게, 이것은 모양이 정말로 안 좋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틀을 정해 놓고 하지 말자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외에는 안 돼. 그렇지요?

여기도 국방부, 방사청 의견을 보면 ‘군 요구 조건이 반영된 반도체가 아니므로 무기체계의 적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제도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국방부나 방사청의 입장인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냥 어떤 거든지 우리 국방반도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의무화를 하지 말자라는 거고?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동의하고.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언주 의원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래도 같은 법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병합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청부입법이 아니냐, 제정법은 방사청에서 해 주세요. 국방반도체는 특별법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굳이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하지 말고, 그냥 방사청에서 하면 심사가 벌써 끝났을 걸……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이언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의 19조를 보시면……

○소위원장 부승찬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

○한기호 위원 111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업체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좀 안 좋아요, 거기까지 안 간 것은 알지만.

○소위원장 부승찬 그것은 위원님들이 삭제해 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몇 장이에요, 그다음?

○전문위원 문성환 다음 5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5장이요?

○전문위원 문성환 그러면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자체 설계·생산한 반도체는 수정의견대로……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예, 알겠습니다.

제5장입니다.

5장은 성일종 의원안 중심으로 하면 14~19조, 이언주 의원안으로 하면 14~21조까지입니다.

제14조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의원안이 같습니다.

제15조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해제 관련 내용입니다.

일단 두 의원안은 같고요. 다만 과기부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따라 주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과기부가 자신의 부처와 협의하도록 요청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수정안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조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두 의원안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17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의 경우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의원안이 다 같습니다.

제18조는 다른 관계 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조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국방부장관을 포함해 달라는 국방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언주 의원안에 몇 가지 새로 추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방반도체 상생협력 지원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수정의견에 포함했구요.

그리고 제20조 국방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안 중심 19조(국방반도체 촉진의 지원 등), 이언주 의원안 21조(국방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여기 역시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는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5장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14조부터 19조까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5조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소관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그 내용 추가 반영하는 내용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아까 한기호 위원님, 19조 부분과 관련돼서……

○한기호 위원 전부 업체를 두둔하는 항이에요, 19조가. 그러면 실제로 이 내용이 우리가 청문회 할 때 포함됐냐면 안 됐을 겁니다, 보나 마나.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지요.

○한기호 위원 안 됐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문성환 예.

○한기호 위원 안 된 게 지금 뒤에 전문위원이 여기다 넣은 거거든.

○소위원장 부승찬 이 부분은 빼고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빼야 된다 이거야.

○소위원장 부승찬 방사청 의견…… 19조.

○전문위원 문성환 공청회 관련해서 정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언주 의원안도 공청회 대상으로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국방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이잖아요. 육성 및 지원이면 전부 국가가 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이런 쪽과 협력하라는 부분도 좀 포함.....

○소위원장 부승찬 기업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기업도 당연히..... 아마 협약을 통해서 개발하게 되면 기업도 그 연구개발비를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일정 부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SPC 같은 경우를 설립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것 완전 국가가..... 여기만 보면 국가가 거의 다 지원한다, 육성하고 지원하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런 부분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들어와서요. SPC를 설립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갈 수 있다 정도는 열어 뒀야 되지 않겠냐. 이걸 국가가, 국방부가 다 짊어지고 갈 거냐,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그 문구를 어디든 넣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거지.

의견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정부 측에서는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득 위원 지금 이 법안에 그런 디테일한 후속조치 할 내용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나 방사청이 이 사업 다 할 수 없어요. 결국은 그런 논의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결정될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 부분과 관련된 문구를 특별법에다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저는 여기 육성과 지원 이 장에 1개의 조를 만들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보면 이게 족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방반도체,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될 거며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거며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한기호 위원 쓰여 있잖아요,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부승찬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밑에다가 한 문구를 넣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구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넣으면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가기는 가야 돼요.

○한기호 위원 법을 만들 때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능력 범위 내 지원한다’ 이렇게 딱 하면.....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19조,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여기 보면 주 내용이 상생협력 지원제도인데 물론 요즘 방산업체 사이에도 대기업체하고 중소기업체 상생협력이 화두이고 또 저도 중요하다는 것 공감을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한테 제약요소 또 장애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9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법령에도 많이 규정된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와 관련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을 하자라는 큰 원칙을 적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 금지 조항 그래 가지고 일종의 제재 관련된 규정들도 있는데 상생협력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돼 있나요?

○**한기호 위원** 결국에는 이언주 의원안의 19조하고 20조 다 살리는 거예요? 여기 ‘수정의견 포함’ 이렇게 써 놔놔야요. 그 얘기면 다 살리자는 얘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포함하는 데 동의합니다. 수정의견……

○**한기호 위원** 이것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지금 유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상생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다 해 놔는데 이래도 돼요? 또 ‘국방반도체 제조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과 상생협력을 한다. 반도체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을 한다. 5년간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의해서 한다’, 계속 이렇게 써 놔는데 이것은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가.

그다음에 20조도 한번 보세요. 20조 2항에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국방반도체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요, 지정해 가지고?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우주나 첨단 분야의 대학과 MOU를 맺어서 계약학과를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5개 대학 정도 있습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방산을……

○**한기호 위원** 방사청이 이것 넣어 달라고 했구만.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자수하네요. 방사청이 넣어 달라고 한 거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핵심이 이언주 의원안 19조하고 20조입니다. 내가 뭐가 다른가 유심히 봤거든요. 19조하고 20조예요. 19조·20조인데 다 읽어 보면 과거에 성일종 의원님 안에 포함을 못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때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이 바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24일 날 청문회를 했는데 이언주 의원님이 18일 날 낸 거야. 수석전문위원이 이것을 포함해서 했다 이거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도 포함하고 싶지 않으나 방사청이 이것 꼭 넣어 달라고, 포함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겠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넣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법이기 때문에. 방사청이 아니고요. 공청회에 하나만 올릴 수 없으니 2개를

넣어 달라, 이것은 제가 한 겁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안은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방사청장만 있다가 주체가 전부 다 국방부장관·방사청장 이 2개가 들어간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9조하고 20조도 그것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19조하고 20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생협력 강화는 저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반도체 사업이 국영기업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방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맞고 그것이 이 법의 필요성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주체가 방위사업청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 주체로 들어가면 사실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장이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도 지원제도를 운영해야 되고 지원제도 대상 선정 어찌고저찌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사를 양성해야 된다는지 그랬을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국가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방반도체산업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이 책임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일부는 지원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국가 국영기업도 아닌데 과도하게 내지는 국가 공공영역의 사업이 아닌데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저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저와 동일하게 이 법의 필요성과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위사업청장이 과도하게 내지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저도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주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방사청장으로만 가는 것인지.....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앞에는 계속 국방부장관·방사청장이 오다가 여기에는 국방부장관이 빠졌는데 그것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19조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부분들, 20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방사청장이 수행하는 고유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반도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게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양 측면이 있었다면 여기는 방사청장 고유영역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혹시 이 법과 관련해서 예산 추계는 하셨는지요. 연간도 있어야 되고 5년 내지는 10년 장기 추계, 예산 추계를 하셨는지, 전체 예산 중에서도 특별히 19조하고 20조와 관련돼서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민간의 영역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방반도체라는 것이 그냥 두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특수한 분야라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육성하지 않으면 계속 해외 외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반도체 육성법을 만들었지만 특별히 국방반도체법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생협력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시행을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반도체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기술돼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부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를 들어서 상생협력 같은 제도들은 이미 제도가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 반도체법에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26년 예산에 5개 정도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억 원 정도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1개 정도 계약학과를 설립한다면 한 이삼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추가……

○백선희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기호 위원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법안 발의한 날짜가 국회의원이 의장실로 접수된 날짜입니까, 아니면 국방위원회에서 접수한 날짜입니까? 어느 날짜예요?

○전문위원 문성환 발의일하고 회부일하고 다릅니다. 보통 발의한 다음 날 위원회로 회부되고요.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발의한 날짜가 18일이라고 그러면 18일 날……

○전문위원 문성환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날짜가 19일이네요. 19일 다음에 공휴일이 끼어 있지요, 토요일·일요일 날. 19일 날 하고 왔으니까 그다음에 21일·22일은 토요일·일요일입니다. 그리고 23일이 월요일, 24일이 화요일.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같이 넣어서 했어요?

○전문위원 문성환 공청회 말입니까?

○한기호 위원 예.

○전문위원 문성환 저희가 공청회 준비하는 과정에 이언주 의원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19조·20조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19조·20조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임의규정이잖아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이것을 굳이…… 성일종 안의 19조(국방반도체 촉진의 지원 등) 이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정부 측 의견을 묻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랑 상생협력 지원제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부분에서 다 중복되는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생협력이나 전문인력 양성도 그냥 방사청 기존의 법이나 규칙이나 이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시가 돼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은 기본적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요.

그래서 113페이지, 성일중 의원의 19조와 이연주 의원안의 21조, 이것에 대한 수정 19조, 그 수정안대로 가면 문제가 없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소위원장 부승찬 19조·20조 중에 이 부분은 넣어 줘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법으로 다 전문인력 양성이나 상생협력…… 우리 상생협력 늘 얘기하잖아요. 굳이 국방반도체법에 상생협력을 넣어야 되느냐 이것을 여쭙보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기존에 있는 법령체계와 제도로도 기본적으로 지원 가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지만 빠져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저는 빼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 하는 과정이……

○소위원장 부승찬 어찌 됐든 이연주 의원안 19조·20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저는 정부 측 의견이 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저도 상생협력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사청장하고 국방부장관을 넣는 것은 이 안대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했으니까 다시 한번, 전력지원체계는 국방부장관이고 무기체계는 방사청장이 주관하니까……

○임종득 위원 지금 그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데 R&D는 기본적으로 방사청장 아니에요?

○임종득 위원 R&D가 두 가지 다 따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따로 있기는 한데……

○임종득 위원 R&D는 방사청에다 하는 것이 지금 시스템상에는 맞지 않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청회에 태워서 이연주 의원안을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이것 방사청이 한 것은 아니에요. 공청회에 넣자 이런 것들은 올라왔을 때 제가 한 거니까 한기호 위원님, 방사청을 너무 나무라시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제가 한 겁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방사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전문위원과 국방부의 의견대로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그러면 상생협력 지원제도, 전문인력 양성 저희……

○소위원장 부승찬 예, 이것은 정부 측에서 빼도 된다고 하니까요.

○전문위원 문성환 빼는 것으로 하신다고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그 두 부분은 빼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의견 주신 것과 그다음에 육성과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논의해서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다 부담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제19항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소위원장 부승찬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마지막 항입니다.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입니다. 신속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2025년 12월 9일 날 발의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사자료 3권 1페이지입니다.

표에 보시면,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사북사건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는 것, 두 번째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 진화위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결의안은 진화위의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진화위는 2008년, 24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사과 등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 두 번째 쪽지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4조에서는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북사건 46주년 기념식이 4월 21일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사북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과와 위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

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면서 동의합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서 국가사과 이행을 위해서 사과의 주체나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한 관련 단체와 기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피해와 명예회복 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용원 위원 동의합니다.

○백선희 위원 동의합니다. 저는 사북 영화를 봤고요. 영화를 보면 누구든지 국가폭력의 큰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화위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국가사과를 요구한 것이니만큼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여기에 동참했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노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선원 백선희 부승찬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황명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이두희

법무관리관직무대리 이정민

인사기획관 이인구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전준범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이성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김미성

병무청

차장 김용무

병역자원국장 정재숙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서승일

방위사업청

차장 김일동

기획조정관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직무대리 김현욱

방위산업진흥국장직무대리 최은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